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법률관리를 위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관할지역 내 기상청이 발송하는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6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7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428”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427”을 “428”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3”을 “434”로 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9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6”을 각각 “526”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를 “95”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9”를 “10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을 “13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0”을 각각 “52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를 “9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7”을 “114”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4”를 “13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후과학국) ①·② (생략)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u><신설></u> 2. ~ 10. (생략) ④ ~ ⑦ (생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u> 에 관한 사항 2.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생략)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의2. (생략) <u><신설></u>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관할지역 내 기상청이 발송하는 호우 관련 긴급 재난 문자방송의 운영(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u> 3. ~ 6. (현행과 같음) ⑥ ----- -----. 1. ~ 9의2. (현행과 같음) <u>9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u>

10. (생략)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u><신설></u>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② (생략)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11. (생략) ④ ~ ⑥ (생략)	<u>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u> 10. (현행과 같음) ⑦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u>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4.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28</u>	<u>429</u>	+1
·	·	·	
·	·	·	
일반직 계	<u>427</u>	<u>428</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91</u>	<u>92</u>	+1
·	·	·	
·	·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33</u>	<u>434</u>	+1
·	·	·	
·	·	·	
일반직 계	<u>432</u>	<u>433</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9</u>	<u>90</u>	+1
·	·	·	
·	·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6</u>	<u>526</u>	+10
일반직 계	<u>516</u>	<u>526</u>	+10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4</u>	<u>95</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99</u>	<u>106</u>	+7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30</u>	<u>132</u>	+2
·	·	·	
·	·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0</u>	<u>520</u>	+10
일반직 계	<u>510</u>	<u>520</u>	+10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5</u>	<u>96</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07</u>	<u>114</u>	+7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34</u>	<u>136</u>	+2
·	·	·	
·	·	·	